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69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이정문 · 이재관 · 신정훈
이상식 · 노종면 · 조계원
김 현 · 권칠승 · 최민희
주철현 · 김재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12호, 제9조의3, 제31조제6호 및 제35조제3항 신설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일간신문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제작 및 편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6.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7.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
 8. 편집 및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9.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편집 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독자의 권익보호 및 독자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편집규약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편집·제작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편집·제작운영계획서의 내용)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편집·제작운영계획서(이하 “편집·제작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제4조에 따른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제6조에 따른 독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관할”을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로 한다.

제31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디어 교육 및 관련 사업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편집규약을 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u>
제5조(편집위원회) <u>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신설></u> <u><신설></u>	제5조(편집위원회) ① <u>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u> -----. ② <u>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제작 및 편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u> 1. <u>편집위원회의 구성·권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 <u>편집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	3. <u>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u> 4. <u>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u> 5. <u>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u> 6. <u>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u> 7. <u>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u> 8. <u>편집 및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u> 9. <u>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u> 10. <u>편집 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11. <u>독자의 권익보호 및 독자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u> ④ 그 밖에 <u>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편집규약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조(등록) ① -----
---	---

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1. (생략)

<신 설>

② ~ ⑤ (생략)

<신 설>

	<u>한다)에는 제4조에 따른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제6조에 따른 독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제14조(사업의 승계)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u> -----.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u><신 설></u> <u>6.·7.</u> (생략)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 -----. 1. ~ 5. (현행과 같음) <u>6. 미디어 교육 및 관련 사업</u> <u>7.·8.</u>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편집규약을 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u>

③ (생략)	<u>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